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체하는 광역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신설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48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4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11.

(3) 회 부 일 : 2024.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주거·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대상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시·도지사도 매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도지사 소속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 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와 협의-----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u> ----- ----- ----- -----

현행	개정안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제13조(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 -----시·도지사-----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u>----- ----- ----- ----- ----- ----- ----- -----<u>시·도지사</u>----- -----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u>시·도지사</u>----- ----- ----- ----- ----- ----- ② <u>시·도지사</u>----- ----- ----- ----- -----

현행	개정안
하여 피해장애아동 컴퓨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 -----시·도지사----- ----- ----- ----- ----- ----- -----.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73개(71%),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36개(97%)로 나타났는데,

2024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대면회의 89회, 서면회의 44회가 개최되어, 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임(참고자료 1: 최근 2년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주요 안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개)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개)		관련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개)		운영현황(개최횟수, 건)							
						2023년				2024년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대면	서면	대면	서면	대면	서면	대면	서면
17	226	17	156	17	219	11	11	55	40	17	8	72	36
243		173(71%)		236(97%)		22		95		25		108	

주1): 개최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미개최’로 간주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의 협의하게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심의 과정상 효율성·신

속성을 제고하고, ② 광역 단위 의사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를 줄여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운영을 도모하며, ③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 시행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82.4%)에서는 반대 의견을, 171개 기초지방자치단체(75.7%)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

구분	찬성	반대	무응답
광역(17개)	3개(17.6%)	14개(82.4%)	-
기초(226개)	171개(75.7%)	43개(19.0%)	12(5.3%)

자료: 보건복지부, 2025.2. 조사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광역 단위로 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① ‘광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를 심의하는 등 기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의견 조정 및 정책의 감독·평가에 중점을 두는 ‘정책조정’이라는 표현보다 ‘장애인복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광역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광역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과

②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조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¹⁾) 등을 정비하기에는 시행일인 ‘공포 후 3개월’은 다소 짧아 보이므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지게 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우려 등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 필요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또한 현행 규정은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7개 시·도에는 모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단위를 광역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할 실익이 적음.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지방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 단위 지방복지위원회 기능을 흡수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대구)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수성(정책 지속가능성, 재정 안정성 확보, 통합적 제도 마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평가받고 있으며,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도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
-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폐지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군·구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어려워지며 행정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협력체계가 약화되어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

견 수립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광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광역 단위로 일원화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 고유 사무로 기획하고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사업의 심의 권한과 자율성 약화,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인한 의사결정 속도 저하 및 각 자치구의 지역 주민 정책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지자체단위의 광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와 시·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 일방적 정책사업 집행방식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용 여부도 불확실함.
- (울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군·구 자체 심의·자문 기능 유지가 필요함.
- (경기) 지역 밀착형 복지 실현의 어려움,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 및 행정 비효율성 증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 약화 등이 우려되며,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따라 시·군·구 자체 위원회 유지가 필요함.
- (강원)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역의 장애인 및 복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심의할 경우 인구현황, 산업환경, 경제구조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복지정책 수립될 수 있어 지역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충북) 개정안 취지에 찬성함. 법정 사업계획 수립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체계성, 효과성 제고 기대. 복지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의 긴밀성, 체계성 향상이 기대됨.
-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폐지되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복지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며, 지역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를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전북) 시·군 간 특성에 따른 장애인 정책 심의 결정을 위해 시·군·구 자체 위원회 존치가 필요함. 광역 단위의 위원회는 큰 규모의 교통 주거 복지사업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심의 기능 강화에 필요함.
- (전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어지게 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발굴 및 결정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다. 기초지방자치단체

- (서울 노원구)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일괄 운영 시 장애인 복지사업의 각기 다른 지역 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인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시행은 주로 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안

건도 신규사업 보고가 대부분으로 광역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경기 과천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인권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의 기능을 대체할 위원회가 없고 위원회 폐지 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강원 동해시) 장애인복지 심의내용은 정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그 기능이 형식적이고, 심의 건수도 저조하여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라. 장애인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정안 내용처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되고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한다면,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추진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행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예산 등 문제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계획이 지연되거나 호지부지될 우려가 있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인 장애인 수요에 맞게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책임과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대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수립된다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아닌 획일화 된 정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최근 2년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주요 안건〉

※ 광역: 16개, 기초: 81개 제출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1	광역	○○시도	○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장애인 날 주요 행사	○ 2024년 주요 업무보고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계획 세부 과제 검토 ○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 방향
2	광역	○○시도	○ ○○○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심의 및 현안 사업 보고(대면)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선정 심의(서면)	○ ○○○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및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계획 심의, 현안 사업 보고(대면)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선정 심의(서면)
3	광역	○○시도	-	○ 제1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심의
4	광역	○○시도	○ 2023년 장애인 복지 추진 계획 심의 ○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7)에 관한 사항	○ 2024년 장애인 복지 추진 계획 보고 및 ○ 제2차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5	광역	○○시도	○ 2023년 ○○○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보고 ○ 2022년 장애인복지기금결산 심의 ○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심의 ○ 장애인회관건립사업 의견 청취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심의 ○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심의
6	광역	○○시군구	○ 2022년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운영 결과 보고 및 ○ 2023년 장애인 복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
7	광역	○○시도	○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착수 보고 ○ 운영비 미지원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심의 의결	○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시행계획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8	광역	○○시도	○ ○○○ 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2021~2023) 2022년 추진 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 2021년~2023년 경기도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의 2023년 사업추진 결과 심의 ○ 2023년~2028년 ○○○ 장애인정책기본계획(안) 및 2023년 사업추진계획(안) 심의
9	광역	○○시도	○ 2023년 장애인복지시책 보고 등	○ 제3기 ○○○ 장애인 복지 발전계획 중간보고
10	광역	○○시도	○ ○○○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심의	○ ○○○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심의
11	광역	○○시도	○ '23년 ○○○ 장애인 복지 발전 시행계획 심의	○ '24년 ○○○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심의 ○ '24년 ○○○ 장애인 복지 발전 시행계획심의
12	광역	○○시도	○ 2023년 모범장애인상 심의 ○ 2023년 장애인 단체요구 안심의	○ 2024년 모범장애인상 심의 ○ 2024년 장애인 단체요구 안심의
13	광역	○○시도	○ 2023년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등	○ 2024년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등
14	광역	○○시도	○ 23~27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 심의 ○ 22 사회 복지기금(장애인 계정) 결산 심의 ○ 23 사회 복지기금(장애인 계정) 기금 사업 선정	○ 23 사회복지기금(장애인 계정) 결산 심의 ○ 24 사회 복지기금(장애인 계정) 기금 사업 선정
15	광역	○○시도	-	○ 2024년 ○○○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상황 보고
16	광역	○○시도	○ ○○○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2023년도 ○○○ 장애인 종합 복지 시행계획(안) 심의	○ ○○○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1	기초	○○시군구	○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방향 논의	○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방향 논의
2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계획 보고 ○ 장애인 주간행사 운영 추진 계획논의	○ 2023년 ○○○ 장애인 복지 추진실적 보고 ○ 2024년 ○○○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계획 보고 ○ 2024년 장애인 주간행사 운영 추진계획 논의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3	기초	○○시군구	○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건 ○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실시 건	○ 「2025년 장애인 일자리」 민간 수행기관 선정 ○ 「장애인 컴퓨터 교실」 수탁 기관 선정
4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업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2025년 장애인 복지 주요 업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5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2022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심의 (대면) ○ 2024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 및 2022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서면)	○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심의 (대면) ○ 2024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서면) ○ 2025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 및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대면)
6	기초	○○시군구	-	○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신규 지정 심의
7	기초	○○시군구	○ 23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 ○○○ 복지 현안 사항 논의 ○ 24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안)심의 등	○ 24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 ○ ○○○ 복지시설 설치 현안 등 논의 ○ 25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안 심의 등
8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안) ○ 2024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안)	○ 2025년 장애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안) ○ 2025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안)
9	기초	○○시군구	○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 ○ 202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 ○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 장애인 친화 상점 "○○○○" 인증사업 ○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노선 정비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10	기초	○○시군구	-	○ 1)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부위원장 선출 2)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및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보고 3) 제1기('24년~'28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심의
11	기초	○○시군구	○ 22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심의 ○ 22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성과분석 심의 ○ 23년 장애인 복지 기금 변경 및 24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 23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및 24년 기금계획 변경 ○ 24년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 사업 제공기관 심의·선정 ○ 23년 회계연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성과분석 심의 ○ 중·고령 장애인 정리수납 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 ○ 25년 장애인 복지 기금운용 계획(안)
12	기초	○○시군구	○ 「2024년도 ○○○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의견 수렴 및 자문 등	○ 「2024년도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및 자문
13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성과 및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추진과제 보고 ○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회의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성과 및 2025년 장애인 복지 주요 추진과제 보고 ○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회의
14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추진 업무 및 2024년 신규사업 계획(안) 보고 ○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의견 제언	○ 2024년 장애인 복지 추진 업무 및 2025년 신규사업 계획(안) 보고 ○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의견 제언
15	기초	○○시군구	○ 부위원장 선출 ○ 2023년 장애인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	○ 2024년 장애인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복지관 개관·운영계획
16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보고(서면) ○ 2023년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면)	○ 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보고(서면) ○ 2024년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면)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17	기초	○○시군구	○ '23년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보고 및 '24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보고 등(대면)	○ '24년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보고 및 '25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등(대면)
18	기초	○○시군구	○ 2023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서면) ○ 2023년 ○○○ 발달 장애인지원계획 심의(서면)	○ 2024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서면) ○ ○○○ 장애인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 검토 및 자문(대면)
19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사업계획 보고	○ 2023년 ○○○ 장애인 사업성과 보고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
20	기초	○○시군구	-	○ 2024년 장애인 복지 추진 계획 보고 ○ 장애인의 날 기념유공자 표창 심의
21	기초	○○시군구	○ 2023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 2024년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22	기초	○○시군구	○ 2023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시행계획(안)	○ 2024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시행계획(안)
23	기초	○○시군구	○ 제2기 ○○○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및 발달 장애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3기 ○○○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24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안)	○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안)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25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상황 보고 ○ 제2, 3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안) 심의 ○ ○○○ 모범장애인 상 수상 후보자심사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 반납 및 향후 계획논의 ○ 장애인 일자리 신규사업 심의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24년 추진계획 보고 ○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논의 ○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논의 ○ ○○○ 모범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심사 ○ 2024년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상황, '25년 신규사업 보고
26	기초	○○시군구	○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선정	○ 장애인 정책사업 추진 및 2024년 기금 사업 상황 보고 ○ 2025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추진 및 선정 등
27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자유토론 ○ 사회복지기금안전 상정 및 심의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자유토론 ○ 사회복지기금안전 상정 및 심의
28	기초	○○시군구	○ 장애인복지관 건축 기획 착수 보고 등	○ 장애인복지관 신축 설계 관련 의견 ○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필요한 사업 제안
29	기초	○○시군구	○ 2023년 부위원장 선출 ○ 2024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각종 제안 의견 수렴)	○ 2023년 장애인 복지 주요 성과 보고 ○ 2024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보고 ○기타 제안사업논의
30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추진 현황 보고 ○ 2024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보고 ○ 현안 과제논의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성과 및 평가 ○ 2025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보고 ○ 현안 사업논의
31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결과 보고 ○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심의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결과 보고 ○ 2025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안심의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32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업무 계획 보고 ○ 장애인 복지 분야 토론 및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 부위원장 선출 ○ 2024년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 계획 보고 ○ 장애인 복지 분야 토론 및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33	기초	○○시군구	○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책 보고	○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시책 보고
34	기초	○○시군구	○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및 2023년 사업 계획 보고 ○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세부 시행 계획 심의 의결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및 2024년 사업 계획 보고 ○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세부 시행 계획 심의 의결
35	기초	○○시군구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안심의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 심의
36	기초	○○시군구	○ ○○○ 장애인 종합복지 계획(2024-2028) 수립 연구 용역 추진사항 보고 ○ 제2차 ○○○ 장애인복지 종합계획(2024-2028)(안)	-
37	기초	○○시군구	-	○ 2024년 장애인 복지 정책 안내 ○ 2024년 장애인복지정책 결과 보고 ○ 2025년 장애인복지정책 안내
38	기초	○○시군구	-	○ 2024년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39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및 2022년 추진 성과 보고, 기타 장애인 복지정책 토의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및 2023년 추진 성과 보고, 기타 장애인 복지정책 토의
40	기초	○○시군구	-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방향 보고
41	기초	○○시군구	○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 프로그램 의견 청취 ○ ○○○무장애나눔길 추진 상황 보고 ○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사업 진행 상황 보고	○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상황 ○ ○○○무장애나눔길 준공 및 성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42	기초	○○시군구	○ 2023년 ○○○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심의	○ 2024년 ○○○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심의
43	기초	○○시군구	-	○ ○○○ 제2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2025~2029) 수립
44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계획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계획 보고
45	기초	○○시군구	-	○ 위원 위촉, 2024년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46	기초	○○시군구	○ 부위원장 선출,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및 현안 보고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5년 장애인 복지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47	기초	○○시군구	○ 2023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 및 장애인 복지 시책의 제도 개선 등 의견 수렴	○ 2024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 및 장애인 복지 시책의 제도 개선 등 의견 수렴
48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 계획(안)	○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 계획(안)
49	기초	○○시군구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이행사항 점검	○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이행사항 점검(상, 하반기)
50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2025년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심의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등
51	기초	○○시군구	○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준, 전동보조기기 연습장 조성, '23년 장애인토론회 개최방안 논의 ○ '24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사업계획논의	○ '24년 ○○○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보고, 주요 사업 안내, '24년 장애인당사자 소통 콘서트 사업추진 논의 ○ '24년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 예산편성 보고, '25년 장애인 복지 사업계획(안) 및 중·고령 장애인 정책(안) 발굴 논의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52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심의 ○ 2023년 중증 장애인 ○○ 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의 ○ 2024년 중증 장애인 ○○ 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의	○ 2024년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 ○ 2025년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의
53	기초	○○시군구	○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위촉장 수여 등	○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 보고
54	기초	○○시군구	○ 2023년 ○○○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 ○ 2022년 ○○○ 장애인복지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 ○ 2024년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심의 ○ 2023년 ○○○ 장애인 복지 기금 추가 지원 사업 선정	○ 2023년 ○○○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 ○ 2024년 ○○○ 장애인복지기금 선정 심의 ○ 2024년 ○○○ 장애인복지기금 변경 운용 계획 (안) 심의
55	기초	○○시군구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의	-
56	기초	○○시군구	○ 1) 2022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2)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2022년 회계연도 ○○○ 장애인 복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24년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2)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 ○ 2024년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2023년 회계연도 ○○○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57	기초	○○시군구	○ 장애인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의	○ 장애인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의
58	기초	○○시군구	-	○ ○○○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용역 중간 보고회 ○ ○○○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용역 최종보고회

연 번	구분	지역	2023년	2024년
59	기초	○○시군구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절차의 대행자 지명심의 계획 ○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대상자추가 선정 심의	○ 무장애 시설 지원 사업수탁 기관 선정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60	기초	○○시군구	○ ○○○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계획 ○ 사업 승인 및 결산	○ ○○○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계획 ○ 사업 승인 및 결산
61	기초	○○시군구	○ 복지관 건립 과정 중 의견 청취 등 자문	○ 장애인 팀 조직개편 안내, 2025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 보고 ○ 장애인복지관건립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설명,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안내, 복지관 공사 현장 방문
62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63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추진 사항 및 2024년 주요 업무,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 논의	○ 2024년 장애인 복지 추진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 논의
64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사항 및 2024년 추진 계획 설명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65	기초	○○시군구	○ 2023년도 장애인 복지 시책 운영방침 ○ ○○○ 장애인 ○○○ 운영 및 추진위원구성	○ 2024년도 장애인 복지 시책 운영방침 ○ ○○○ 장애인 ○○○ 운영 및 추진위원구성
66	기초	○○시군구	○ 장애인복지사업 성과공유 및 신규사업 추진 방향	○ 장애인복지사업 성과 보고 및 종합계획 보고 등 ○ 장애인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 대상업소 선정심사
67	기초	○○시군구	○ 2024년 장애인일자리(복지형, 특화형) 민간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	-
68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업무 추진실적 현황 및 계획 보고	○ 2024년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69	기초	○○시군구	-	○ ○○○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및 의견 청취
70	기초	○○시군구	○ 농어촌주택 개보수 대상자 선정 심의(2회)	-

연 번	구 분	지 역	2023년	2024년
71	기초	○○시군구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신규 지정 심의	○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지정 심의
72	기초	○○시군구	○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장애인복지종합계획 보고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건의 사항수렴	○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장애인복지종합계획 보고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건의 사항수렴
73	기초	○○시군구	-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장애인 복지 분야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74	기초	○○시군구	-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보고 ○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계획 보고
75	기초	○○시군구	-	○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 2024년 장애인 복지 주요 사업안내 ○ 당면현안 사항 및 운영방안 논의
76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
77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
78	기초	○○시군구	-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시행계획 보고 ○ ○○○ 장애인 복지 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 등
79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
80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
81	기초	○○시군구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 보고	-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